

2023년도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「2023년도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. 04. 24.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제주 배경 또는 소재(문화, 역사, 생활 등) 활용을 촉진하고, 기획 단계(Pre-Production)에서 촬영 단계(Production)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·활성화하고자 함

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23.11.30.까지
- 사업내용 : 제주 영상·영화인의 작품 제작기획 및 시나리오 작업 등을 위한 체재비 지원

지원규모	지원내용	비고
2편(팀) 내외, 총 지원금 9,000천원	• 작품 기획·개발 관련 체재비(일비) 지원 - 1일 최대 10만원(2인 13만원, 3인 15만원) - 최대 3인, 29박 30일 이내 지원	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정산·검토 후 지급(사후정산)

※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고 예정

- 지원대상 : 당해사업 연도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 중 영화, 드라마 등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감독, 메인 프로듀서, 메인 작가(※ 포트폴리오 1편 이상 제출 필수)

※ 도내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, 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포함

※ 신청자(사) 외 영상 제작 참여 경험이 있는 작품관계자 2인까지 동반참여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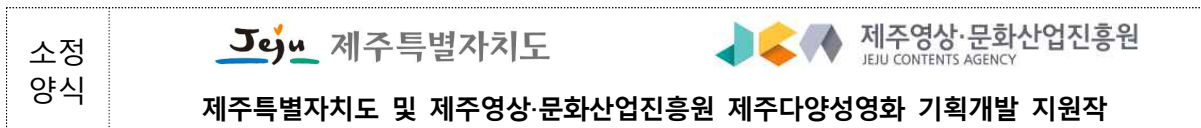
※ 본 사업의 선정 이력이 있는 작품은 신청 불가

- 지원금 사용 용도 : 도내 체류를 통한 작품 기획개발 비용(숙박비, 교통비, 식비, 자료수집비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)
- ※ [별첨1. 사업비 집행 및 증빙 기준]에 의거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

3.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

○ 지원조건

- 결과알림 이후 2023.10.31. 이전까지 원하는 일정에 기획개발을 시행하고, 시행일에 맞춰 약정체결을 완료해야 함
- ※ 시행 일정은 진흥원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, 일정 중 1회 이상 진흥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. 방문 시 사업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 취소될 수 있음
- 기획개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 보고서(정산자료 포함) 및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
- 결과물에 대한 작품 제작 시 홍보자료 및 상영(방영)본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의 지원 사실 표기
- ※ **작품 제작 시 사전에 제작일정 및 내용을 진흥원에 필히 보고하여야 함**



- 진흥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성과물 및 수행기업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-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
 -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
 -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촬영 예정이거나 이미 촬영이 시작된 경우
 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(과제 목표, 산출물 등)으로 제주특별자치도 (산하 유관기관 포함)로부터 중복하여 기획개발 지원을 받은 경우
 - ※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, 기금, 도외 지자체,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지원 가능하나 동일 항목의 중복수혜는 불가
 - 당해연도 이전 「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(제작지원, 후반작업 지원 등)」에 선정된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※ 신청일 이전까지 과제수행을 완료한 후 신청 가능

-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·환수금 등이 미완료·미납 중인 경우
 - 진흥원의 관련 규정 또는 협약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 -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- 「영화인 신문고」 기준 영화 스텝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 -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 -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, 의결한 작품
- 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4. 지원금 집행 및 교부·정산

○ 지원금 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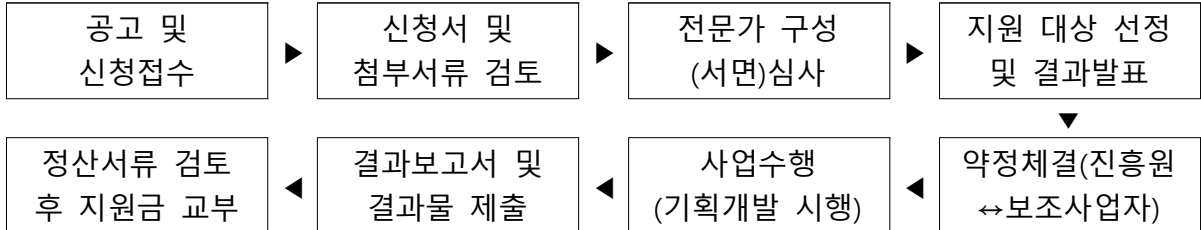
- 보조사업자는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, 지원금은 약정체결 시 등록된 카드의 지출만 증빙 가능함
- 지원금 집행기간은 약정서상의 수행기간으로 하며, 집행 사용처는 제주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업체의 지출 영수증만 인정됨
- 진흥원은 보조사업자의 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지원금 정산 및 교부

- 보조사업자는 기획개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흥원이 요구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원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 - 제출서류 검토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지원금 지급
- ※ 신청인(사)의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
(지원금액 한도 초과 시 한도금액 지급, 한도 미만 시 실제 지출금액만큼 지급)

- 제출서류 : 결과보고 제출공문 및 결과보고서, 집행 증빙자료, 기획 개발 결과물 일체(시나리오 또는 구성안, 콘티, 로케이션 헌팅 보고서 및 사진, 전문가 자문결과, 향후계획 등)

5. 지원절차



6.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

○ 진행일정

- 공고기간 : 2023.04.24.(월) ~ 05.17.(수)
- 접수기간 : 2023.05.08.(월) ~ 05.17.(수) 17:00까지, 10일간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flyjfly@ofjeju.kr)

- 제출서류 및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ofjeju.kr>) 참조
-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접수 가능(제주시 신산로82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2층 영상산업팀)

○ 제출서류 : [별첨2. 지원사업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] 확인 후 작성

-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- 트리트먼트 또는 시나리오 1부 (다큐멘터리의 경우 구성안 제출)
※ 트리트먼트 : 시나리오 직전 단계의 원고로 줄거리 등을 적은 것
- 포트폴리오 및 영화참여 크레딧 증명 1부
- 기타 서류 각 1부 (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지원사업 체크리스트, (예비)심사위원 추천표 등)

○ 접수 및 문의 :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

사업명	담당자	연락처	메일주소
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	장수환 선임	064-735-0623	flyjfly@ofjeju.kr

7. 선정방법 및 기준

- 심사일정 : 2023년 5월 중 (※ 진흥원 내·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)
- 심사방법
 - 1차 : 서류검토(미비서류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 - 2차 : 전문가 3인 이내 구성된 심사위원 (서면)심사
- 심사기준

심사항목		배점	비고
주제 및 기획의도의 명확성		20점	
소재 및 인물의 독창성, 참신성		20점	
이야기 구성의 완결성		20점	
제작실행 가능성		20점	
지역성(제주 관련 내용) 및 제주 로케이션 가능성		20점	
합 계		100점	
우대가점	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내 입주기업(2점)	2점	

- ※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지원 선정
- ※ 선정 포기, 약정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

8. 기타사항

- 유의사항
 -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 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,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봄
 - 다음의 경우 지원철회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약정기간 내 기획개발을 시행하지 않거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지원신청 내용과 비교하여 작품의 내용 및 진행 목표가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

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지원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(작가 포함)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위 사유 등으로 선정이 취소될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

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,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봄

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